

#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2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□ 제안이유

- 이장의 임무수행시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개정하여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 도모 (안 제3조)
  - 이장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「직무상 명령에 복종」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「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」로 개정

## □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복무) 제2항중 "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" 를 "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복무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 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④ 현행과 같음</p>	<p>제3조(복무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----- -----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----- -----.</p> <p>③~④ 현행과 같음</p>